

제31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5. 6. 17.(화)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고종선

목 차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8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63호
- 제 출 일: 2025년 6월 5일
- 제 출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2. 제안사유

- 디지털기기에 친숙한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법도박에 접근하고 경험하기 쉬워짐. 또한 가족 및 교우관계 단절, 범죄 등 2차 문제로 이어지는 청소년 도박중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박 중독 예방교육과 지원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사업 및 홍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청소년 보호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등의 2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중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도박 중독 예방교육과 지원을 통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4항에 따르면 전자·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매체에 대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공표한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중 4.3%가 1회 이상 도박을 경험하였으며, 그중 20%가량이 6개월간 지속적으로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밝힌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의 이용자수는 2020년대 대비 14배 폭증, 불법도박 중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이에 최근 온라인을 통한 접근이 증가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안이 유와 같이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상 도박이 포함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는바, 지원사업 추진시 광역의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64호
- 제 출 일: 2025년 6월 5일
- 제 출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2. 제안사유

-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는 범위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시간 및 연장근무 등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실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민원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휴무·연장운영 등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2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① 민원실 운영시간 지정, ② 민원인 편의 제고사항, ③ 민원실 연장 운영 등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매년 각 행정기관이 민원행정 제도 및 서비스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영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점심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기 위해 조문으로 규정(안 제4조)하였으며,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기관의 경우 단계적으로 사전 홍보, 편의 제공(대기공간,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사전 예약제 등), 애로사항 모니터링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를 통해 점심시간 휴무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연장운영은 민원실 근무자 보호를 위해, 가급적 1일 2시간 이상 초과 운영을 자제하고 있기에 안 제6조에서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운영을 명기하였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 결과 ▲민원실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하기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따른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사항 및 연장 운영 실시, ▲민원실 근무자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한 점 등을 토대로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65호
- 제출일: 2025년 6월 5일
- 제출자: 곽동환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2. 제안사유

- 건축물 착공신고 시 안전관리에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 및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축구조 분야에 전문위원회 구성 의무화(안 제9조제1항)
- 안전관리에치금 예치 건축물 연면적 확대(안 제19조제1항)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안 제22조제3항제5호~제7호)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및 연장 제한 근거 마련(안 제22조제5항·제6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사항은 ①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 의무화, ②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대상 확대, ③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 등입니다.

- 2024년 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 별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시행일 2025년 12월 이전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규정을 통해 향후 보다 전문성 있는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안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과 관련하여 기존 별도의 규정으로 연면적 5천제곱미터로 규정한 사항을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소 규모 건축물 방치에 따른 안전 문제 사전 예방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였다 판단됩니다.

-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 제22조(가

설건축물)에서 신설한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에 따른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를 비롯,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휴
게·경비 시설, 비가림 및 공기막 구조물 등의 경우 제15조제5항제1
호부터 제14호와 비슷한 용도로써 적용가능하다 판단되며, 해당 시
설물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함으로써 현장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
하던 해석상의 혼선을 줄여 행정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
니다.

- 위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 정합성 유지와 행정편의
도모를 위해 개정되었기에,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
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62호
- 제 출 일: 2025년 6월 5일
- 제 출 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2. 제안사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책무등·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정보 연계·통합 및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달성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뜻합니다.
- 과거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범국민적 이해를 위해 2017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고, 이후 2018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에서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의 2곳을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인증도시는 10개 도시, 스마트도시 정부 지원사업 추진 지자체는 147개의 지자체입니다.

구 분	인 증 도 시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김해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시흥시
중소도시(인구 50만 미만)	강릉시, 대구 달서구, 서울 강동구, 서울 서초구, 오산시, 서울 종로구

- 현재, 대구광역시 및 관내 자치구 중 스마트도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곳은 3곳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주요 조문
대구광역시	· 스마트도시계획 ·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 실무협의회 구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 계획수립 · 스마트도시위원회 구성 · 데이터 수집 및 활용 · 실무협의회 구성 · 주민참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 계획수립 · 스마트도시위원회 구성 · 데이터 수집 및 활용 · 전문인력 양성 등 · 주민참여

- 상위법령상 조례위임조문으로 명시된 사항은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②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6조 및 제9조에 명기되어 있으며 해당 조문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추진할 경우에 진행되는 사항으로써 계획수립 시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달성군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에,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구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수립』(2021년~2025년)의 진행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령상 명기된 조례위임조문을 규정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계획 종합계획의 방향성과 연계를 통한 상위계획과의 체계적 연계를 도모한 점 등을 토대로 본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77호
- 제 출 일: 2025년 6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2. 제안사유

- 행정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과 중심의 부서를 분리하고,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복지팀을 통합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의 일관성을 강화하며, 기준인건비 초과사용에 따른 부서별 인력을 재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업무 추진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

3.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 국 단위 개정사항 : 안 제3조, 제6조
 - 명칭변경 : 자치행정국 → 행정국
 - 과 단위 개정사항 : 안 제5조 ~ 제10조
 - 기획예산과 : 과 분리(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홍보협력과)
 - 자치행정과 : 명칭변경(총무과)
 - 교통과 : 과 분리(교통과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 사회복지과 : 명칭변경(생활보장과)
 - 행복나눔과 : 명칭변경(장애인복지과)
 - 가족정책과 : 과 신설
 - 청소위생과 : 과 분리(청소위생과 → 청소자원과, 위생과)
 - 청소자원과 : 국 이동(주민복지국 → 경제환경국)
 - 안전하천과 : 명칭변경(안전총괄과)
 - 하수하천과 : 과 신설
- 팀 단위 개정사항 : 안 제5조 ~ 제10조
- 기획예산과 : 팀 분리(정책사업 → 정책사업1, 정책사업2)
팀 이동(홍보, 혁신평가, 인구청년정책 → 홍보협력과)
 - 홍보협력과 : 팀 이동(홍보, 혁신평가, 인구청년정책 ← 기획예산과)
명칭 변경(혁신평가 → 평가지원)
 - 도시공원과 : 신설(조경사업)
명칭 변경(공원개발 → 공원조성, 공원관리 → 조경관리)
 - 교통행정과 : 팀 이동(교통행정, 차량관리, 차량등록 ← 교통과)
 - 교통지도과 : 팀 이동(교통지도, 교통시설, 교통특사경 ← 교통과)
 - 청소자원과 : 팀 이동(청소행정, 재활용, 폐기물관리 ← 청소위생과)
명칭 변경(재활용 → 자원순환)
 - 생활보장과 : 팀 이동(주거의료복지 ← 행복나눔과)
 - 장애인복지과: 팀 이동(장애인복지 ← 사회복지과), 신설(장애인시설)
 - 가족정책과: 신설(아동정책), 팀이동(드림스타트, 아동보호 ← 행복
나눔과, 여성가족 ← 복지정책과)
 - 위생과: 팀 이동(위생행정, 위생지도, 식품안전 ← 청소위생과)
 - 도시정비과: 팀 분리(농업시설 → 농업시설1, 농업시설2)

- 하수하천과 : 신설(하수관리), 팀 이동(하수시설 ← 도시정비과, 하천시설, 하천관리 ← 안전하천과)
- 체육진흥과 : 명칭변경(공공체육시설 → 체육시설1, 생활체육시설 → 체육시설2)
- 7개 읍면(화원읍, 다사읍 제외) : 팀 통합(복지+맞춤형복지 → 맞춤형복지)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비대상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를 신설하여, 일하는 조직,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및 군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국 명칭변경 및 과 분리, 명칭변경 등의 업무 조정을 개편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4.3.29) 개정·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여 국장급 기구의 설치를 자율화함에 따라 본 조직개편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 현 정부 인력운영 방침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통해 군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78호
- 제 출 일: 2025년 6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2. 제안사유

- 행정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과 중심의 부서를 분리하고,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복지팀을 통합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의 일관성을 강화하며, 기준인건비 초과사용에 따른 부서별 인력을 재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업무 추진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원 조정 함

3. 주요내용

- 시험수당 지급대상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 안 제2조
 -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중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 : 1,040명 → 1,052명
 -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 1,015명 → 1,027명
-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개정 : 안[별표 2]
 -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 조정
 - 5급 상당 이상 : 30% 이내

- 6급 상당 : 40% 이상
- 7급 상당 : 30% 이내
-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 : 안[별표 3]
 - 총 정원 : 1,040명 → 1,052명(+12)
 - 본청 정원 : 669명 → 693명(+24)
 - 읍면 정원 : 235명 → 223명(-12)
 - 연구사 정원 : 4명 → 3명(-1) / 별정직 정원 : 3명 → 4명(+1)
 - 기타 직급별 세부 인원 조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사유서 첨부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에 따른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제1항제3호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에 해당합니다.
- 또한, 별정직 공무원 5급 및 7급 상당 비율은 축소하고, 6급 상당 비율은 확대함으로써 실제 업무 배치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직급 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조직 내 중간관리자 역할이 필요한 6급 상당 인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집행력과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원 조정을 통해 민선8기 군정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679호
- 제 출 일: 2025년 6월 5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6월 13일

2. 제안사유

- 소식지 편집 및 제작, 발행 등을 위해 소식지 편집위원회 활성화
-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선 및 보완

3. 주요내용

- 위탁교육훈련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와 관련된 사항(안 제2조)
- 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6조)
 -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예산실장 →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 부서장
 -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 관련 분야의 군 소속 공무원
 - 상임위원 삭제
- 소식지 편집위원회 서기 인원 수정(안 제8조)
 - 서기 2인 → 서기 1인

- 소식지 편집위원회 회의 시기 수정(안 제9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 → 반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
- 자료수집 삭제(안 제11조)
 -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 삭제
- 수당 및 여비지급 삭제(안 제14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여비와 수당을 지급 삭제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비대상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소식지 편집위원회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 기존의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관련 분야의 군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한 것은, 편집위원 구성의 내부화를 통해 정책 일관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군정 홍보에 적합한 방향으로 편집 방침을 일원화하고, 운영의 신속성과 행정과정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식지의 다양성과 개방성이 줄어들 수 있는 우려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기존 수시개최에서 연 2회 이상 규칙화하여 편집위원회의 정례화를 유도하여 조직의 계획성과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 종합적인 검토결과 행정 조직의 유연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점, 편집위원회를 내실화 한 점 등을 볼때에,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